

의료통역공통기준

의료통역 기준을 검토하는 협의회

목 차

1	기준책정의 목적	3
2	기준의 시점	3
3	용어의 정의	3
4	기준책정의 수속	3
5	공통기준의 항목과 설명	4
6	공통기준검토 멤버	7
7	참고문헌	8
8	공통기준의 이용요령	8

■ 의료통역 기준을 검토하는 협의회란?

목적 의료통역을 파견하고있는 전국 단체에 의하여 활용 가능한 의료통역에 관한 공통기준을 검토하고,책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설립 2010년 5월

구성단체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다문화 공생센터 교토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다언어사회 리소스 가나가와 (M I C가나가와)

회장 西村明夫(니시무라 아키오) M I C가나가와 프로그램코어드바이저

사무국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다문화 공생 센터 교토

의료통역 공통기준

의료통역은, 일본어 회화능력이 충분치 않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관련하여 환자나 가족(이하 ‘환자 등’이라 한다.) 과 의료종사자의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중계자 역할을 함과 동시에,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의료종사자를 신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로서, 의료종사자가 최선의 의료를 행할 수 있도록 함과 함께, 환자가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료통역사는 이하 여러 항목에 근거하여, 한층 더 레벨향상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 또, 일본어 회화능력이 충분치 못한 환자 등을 수용하는 의료기관은, 이하의 여러 항목을 달성한

의료통역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의료통역사를 파견하는 기관□단체는, 이하의 여러 항목의 달성을 위한 환경정비에 힘쓸 것을 권장하는 바이다.

1 기준책정의 목적

의료통역에 관한 개인 및 의료통역 파견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파견기관 □ 단체'라 한다)가 학습이나 육성, 도달 목표의 설정, 채용전형 등에 있어서 하나의 '목표'로써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2 기준의 시점

- ① 다문화 사회 실현에 공헌하는 것일 것.
- ② 이용자를 안심시키고 신뢰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일 것.
- ③ 의료통역을 전문직의 하나로써 인식할 것.
- ④ 전문직으로써 양성하여 학습의 필요가 있는 사항을 추출하고, 체계화하는 것일 것.
- ⑤ 제시한 사항은, 의료통역 트레이닝 등의 과정에서 양성하고, 습득할 수 있는 것일 것.
- ⑥ 공통기준은 다른 기준을 배제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실정(지리, 통역인재, 자원, 문화 등)에 적합하게 수정가능한 것일 것

3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있어 다음 항목에 제시되는 용어의 정의는, 해당항목에 기재된 대로 한다.

- ① '의료통사자'란, 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의료 방사선 기사, 물리치료사, 의료 사회복지사, 의료계 직원 등을 말한다.
- ② '이용자'란, 의료통역 서비스를 이요하는 일본어 회화에 있어 어려움을 겪는 환자 등 및 의료종사자를 말한다.
- ③ '의료 실천 스타일'이란, 진료방법 이나 간호방법, 환자 등과의 접촉방법 등, 의료종사자의 행동양식 경향을 말한다.

4 기준책정의 수속

- ① 의료통역 기준을 검토하는 협의회의 검토 멤버에 의한 검토(멤버는 제 6 항 참조)
- ② 의료통역을 연구 테마의 하나로 하는 학회나 연구회의 논의
- ③ 제 3 회 의료통역을 생각하는 전국 회의의 파견단체 실천자 등과의 논의

5 공통기준의 항목과 설명

대항목	중항목	소항목	설명
지식	환자의배경 다문화에 관한 지식 이해	환자 등의 생활배경	□재류자격제도나 환자 등의 생활상황, 일본어의 이해가 불충분한 환자 등의 의료장면에서 곤란한 상황 등에 관한 지식 이해
		환자 등의 출신국 지역 문화	환자 등의 출신국 지역의 종교, 습관, 가치관차이에 관한 지식 이해
		환자 등의 출신국 지역 의료	□환자 등의 출신국 지역의 의료제도, 의료 실천스타일(일본과의 차이)에 관한 지식 이해
		지원기관 단체에 관한 지식	□각종 지원기관 단체 등, 환자 등을 지원하는 기관의 정보
	의료에 관한 지식	진체 조직과 그 기능	□신체기관의 조직에 관한 지식
		기초적인 의학용어	□기초적인 질병과 그 증상에 관한 용어(문진에서 사용되는 정도)의 지식
		검사 치료방법에 관한 기초지식	□주된 검사방법이나 치료방법, 투약 복용방법에 관한 기초지식
		보건위생에 관한 기초지식	□감염증에 대한 대책, 예방접종 등에 관한 기초지식
		의료기관의 검진 순서	□접수, 진찰, 검사, 치료, 계산, 약 처방 등 검진순서에 따른 환자 등의 움직임에 관한 지식
		환자의 심리	□질병에 걸렸을 때의 인간의 심리(분노, 불안 등)
		의료종사자의 역할과 경향	□의사, 간호사, 의료 사회 복지사 등 의료종사자의 종류와 역할에 관한 지식 □일본의 의료종사자의 의료 실천 스타일에 관한 지식
	의료보건 보건복지제도	□각종 건강보험제도, 출산 일시금, 공비부담제도, 해외여행 상해보험 등에 관한 지식	
	소속기관 단체, 의료통역 전체에 관한 지식 이해	소속기관 단체의 사명에 관한 지식 이해	□소속기관 단체의 사명, 조직구성, 활동내용에 관한 지식
		파견제도 사업에 대한 지식	□의료통역 파견제도 사업내용, 파견규칙,

(파견기관□ 단체에 소속된 경우)	이해	의료통역 지원기능에 관한 지식
	의료통역의 현상과 과제	□의료통역에 관한 전국적인 대처 현상과 과제의 개요

기술	어학능력	일본어□대상언어의 기초능력	□통역사가 환자로써 진료현장에 갔을 때, 서로 주고 받을법한 회화내용을 모국어, 대상 언어로 말할 수 있을 것.
	통역기술 (※ 1)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	□집중력□청취능력
		이해한다	□대화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
		기억한다	□단기적으로 기억을 보존□유지 능력, 이를 위한 메모 기술
		전한다	□충분한 어휘, 표현, 구문, 문법 등의 구사력 □발음이나 발성능력, 장면에 적합한 전달능력
	실천적 기술	통역의 중단□내용확인	□이용자의 발언내용이 애매한 경우에 통역을 중단하여, 재차 회화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필요에 따라 사전을 찾아볼 것
		상황판단	□뜻밖의 사태에 냉정하게 대응하는 등, 현장 경험으로 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 임기응변
	의사소통□기술	대상에 대한 원조 (※ 2)의 기초기술	□상대방이 말하기 쉬운 침착한 태도로 대할 것(경청) □따뜻한 시선, 바디 랭귀지(비 언어적 의사소통)에 주의할 것 □적절한 자리□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

※ 1 통역기술은 ‘상대방의 말을 경청’ 하고 그것을 ‘이해’, 단기적으로 ‘기억’, 대상 언어(또는 모국어)로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에 부수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소항목의 기재순서는 그 순서에 따르고있다.

※ 2 ‘대상에 대한 원조’란, 사회복지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개념이다.

윤리	기본적인 인권 존중	□국적, 인권, 민족, 종교, 신조, 연령, 성별 및 성적 지향, 사회적 지위, 경제적 상태, 라이프스타일, 문화적 배경, 신체적 정신적 상태, 건강문제의 성질 등에 상관 없이 모든 사람을 소중한 존재로서 존중하여, 공정하게 대응할 것
	수비의무	□적무상 알게된 환자의 정보등의 수비의무를 지킬것.
	프라이버시의 존중	□환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환자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을것.
	중립 □객관성	□통역의 업무범위를 지키고 이용자의 의견에 참견하거나 조언하지 않을것. □통역사 자신의 가치관이나 주관을 넣지않을것.
	정확성	□상기의 지식이나 기술에 대한 각항목에 기재된 것을 최대한 지킬것. □통역사는 충실하고 정확하게 통역을 행하고 환자등의 배경이나 문화에 대하여 고려할 것.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자각하고, 그것을 넘어선 통역을 하게될 경우에는 그 것에 대하여을 이용자에게 알릴 것.
	전문성의 유지 □향상	□통역능력의 유지 및 향상에 힘쓸 것. □향상 통역사로서 필요한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나 보다 깊은 지식을 습득을 추구할 것.
	신뢰관계의 구축	□통역사는 이용자를 존중하고 이용자가 말하기 쉬운 태도를 취할것. □상대에 대한 배려심을 가질 것.
	이용자와의 사적인 관계 회피	□이용자와 개인적인 관계를 구축하지 않을 것. □통역사는 인간관계상 혹은 감정면 등에서 공평한 통역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의뢰는 거절할 것. □그 입장을 이용하여 이용자로부터 개인적인 보답을 받지 않을 것.
	의료종사자, 지원단체, 전문가와의 제휴 및 협력	□의료종사자나 관계자의 제휴 및 협력관계를 중요하게 여길것. □환자 등으로 부터 상담 등을 혼자서 떠맡지 않을 것.
	건강보존 및 증진	□업무와 사생활과의 균형을 지키는 등, 통역사 자신의 심신의 건강보존과 증진에 힘쓸 것.
품행의 보존	□사회인으로써 시간엄수, 청결유지, 적절한 복장(업무시는 깔끔한 복장, 향수는 금물)등 절도와 예의를 지킬 것.	

통역사가 소속하는 기관 및 단체의 의의	통역사의 육성	<input type="checkbox"/> 연수 및 기술 향상을 제공할 것.
	통역사의 보호	<input type="checkbox"/> 통역사에게 과잉부담을 주지않을 것. <input type="checkbox"/> 적절한 감염예방대책을 가지고 통역사에게 육체적이나 정신적인 부담이 되지 않도록 배려할 것.
	사회에 대한 책임	<input type="checkbox"/> 의료통역을 이해하는 의료기관의 확장에 힘쓸 것과 동시에 사회적 인식을 깊이 할 수 있는 대처방식을 행할 것.

6 공통기준검토 멤버(존칭생략)

西村 明夫(니시무라 아키오)

NPO법인 다언어사회 리소스 가나가와 프로그램 어드바이저

일본 퍼블릭 서비스 통역번역학회 이사

重野 口久里(시게노 아쿠리)

NPO법인다문화공생센터 교토 이사장, 의료통역파견사업 통괄

비와호 국제의료 포럼 주최자

(이하, 오십음절 역순)

森田 直美(모리타 나오미)

NPO법인 다언어사회 리소스 가나가와 영어의료통역 스태프, 회의통역사

三浦 遼(미우라 료)

NPO법인 다언어사회 리소스 가나가와 총무부장 겸 영어의료통역 스태프

政宗 敦子(마사무네 아츠코)

NPO법인 다문화 공생센터 교토 의료통역 코디네이터 겸 영어통의료통역사

前田 華奈(마에다 카나)

NPO법인 다문화 공생센터 교토 의료통역 파견 사무국 스태프

鶴田 光子(츠루타 미츠코)

NPO법인 다언어사회 리소스 가나가와 이사장

성 테레지아 병원 복지 의료 상담실 관리자 (사회복지사)

高嶋 愛里(타카시마 아이리)

NPO법인 다문화 공생센터 교토 이사, 의료통역 코디네이터

간호사, 보건사, 비와호 국제 의료포럼 주최자

口田 貴志(사와다 타카시)

NPO법인 다언어사회 리소스 가나가와 이사, 미나토초 진찰소 소장

佐藤ペティコ(사토 페티)

NPO법인 다언어사회 리소스 가나가와 중국어의료통역 스태프

岩本 弥生(이와모토 야요이)

NPO법인 다언어사회리소스 가나가와 코디네이터 겸 포르투갈어 의료통역 스태프

7 참고문헌

- (社)神奈川県社会福祉協議会かながわボランティアセンター [2002]、『医療通訳ボランティアガイドライン』、同センター
- 国際看護師協会 (ICN) [2005]、『ICN看護師の倫理綱領』、同協会
- (財)自治体国際化協会 [2003]、『専門通訳ボランティア研修プログラム(医療編)』、同協会
- (社)全国手話研修センター [2008]、『手話通訳士現任研修教材』、同センター
- (特活)多文化共生センターきょうと編 [2006]、『医療通訳養成講座報告書』、同センター
- (特活)多文化共生センターきょうと編 [2007]、『第2回医療通訳を考える全国会議「ことばと医療の未来」報告書』、同センター
- (特活)多文化共生センターきょうと編 [2010]、『文化とコンピューティング国際会議「医療の多言語支援」報告書』、同センター
- The National Council on Interpreting in Health Care, 2004, A NATIONAL CODE OF ETHICS FOR INTERPRETERS IN HEALTH CARE
- 西村明夫編 [2006]、『ことばと医療のベストプラクティス』、MICかながわ
- 西村明夫編 [2006]、『医療通訳を考える全国会議 2006 報告書』、MICかながわ
- 西村明夫編 [2007]、『医療通訳国際シンポジウム報告書』、MICかながわ
- 西村明夫 [2009]、『外国人診療ガイド』、メジカルビュー社
- 西村明夫ほか [2009]、『医療通訳の課題』、『日本パブリックサービ通訳翻訳学会秋季大会』、同学会
- (社)日本医師会 [2000]、『医の倫理綱領』、同会
- (社)日本看護協会 [2003]、『看護者の倫理綱領』、同協会
- (社)日本社会福祉士会 [2005]、『(社)日本社会福祉士会の倫理綱領』、同会
- 連利博編 [2007]、『医療通訳入門』、松柏社

8 공통기준의 이용요령

- ① 이 공통기준은 의료통역의 발전과 보급을 위하여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복사, 가제수정 등 무방함.
- ② ①의 이용에 있어서는, 출처를 명기할 것. 파견기관 단체가 이 공통기준을 가제수정하여 독자적으로 기준을 작성한 경우, 사무국에 그 취지를 알릴 것.
- ③ ①의 이용을 포함하여, 이 공통기준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무국의 허가를 받을 것.

■ 발행년월 **2010년 10월 15일**

■ 발행자 의료통역 기준을 검토하는 협의회

(구성단체)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다문화 공생센터 교토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다언어사회 리소스 가나가와 (MIC가나가와)

(사무국)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 다문화 공생센터 교토

(우)600-8191 京都市下京区五条高倉角堺町 21 事務機のウエダビル 206

E-Mail info@tabunka-kyoto.org